

충청남도 공고 - 2018 - 1104호

2018년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시험 방법	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남	여	양성	
	계	310	200	77	33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방분야	140	17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경	법무분야			3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지 방 소방사	구급분야 (응급구조사)	30	30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구급분야 (간호사)	30	30		
구조분야				30		

2. 시험 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법무분야는 필기시험 미 실시]

- 배점 및 문항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공개경쟁채용[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 ~ 11:00 (60분)]
- 문제출제: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 (시험문제 공개)

※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의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제 범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법무분야 3배수, 그 외 분야 2배수 선발예정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함 (붙임 2)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법무분야 체력시험 미 실시]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6개 종목(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 (붙임 3)
- 합격자 결정: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참조 (세부내용은 **붙임 4**)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붙임 5**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검사방법: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서류전형일에 시험 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 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별표3(**붙임 6** 참조)에 따름
- ※ 색각 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4차 시험: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검사

- 제출서류: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성·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 (총점의 50% 이상)인 자.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채용 분야별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소방분야와 구급분야에서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같은 분야 상대성의 일정 인원을 분야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시험	최종합격 결정방법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체력, 면접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으로 결정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급분야		
	구조분야		
법무분야		면접	면접 성적순으로 결정

※ 공통사항: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인·적성 검사)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또는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

나.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2018년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진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 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법무분야(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그 외 분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조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관련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허·자격 및 경력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면허증: **면접시험 최종일**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세청) 소득증명원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바.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법무분야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의 실 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안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공적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2급, 간호사 또는 의사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⑨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 확인서 필요) ⑩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 임용예정계급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 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붙임 7)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2018년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소방무원 채용시험	○ 접수: 8.16.(목) ~ 8.21.(화) * 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취소: 8.22.(수) ~ 8.24.(금)	필기시험	9.14.(금)	10.13.(토)	11.02.(금)
		체력시험	11.02.(금)	11.14.(수) ~ 11.21.(수)	11.23.(금)
		신체검사	11.23.(금)	11.26.(월) ~ 11.28.(수)	12.10.(월)
		서류전형	11.23.(금)	12.06.(목) ~ 12.07.(금)	12.10.(월)
		면접시험	12.10.(월)	12.17.(월) ~ 12.21.(금)	12.24.(월)

※ 장소공고 및 합격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채용예정계급	응시수수료	비 고
지방소방사	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지방소방경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자격을 확인하고 개인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 규격: 파일형식 JPG,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이상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포함)으로 등록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소정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나”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의사상자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분야별·계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

다.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및 「소방공무원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면허증별 가점 비율표: (붙임 8)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등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 기란은 폐지됩니다.)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고문의 시험일정 및 정보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 신체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무선호출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에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상요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를 참고하시고,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041-635-5562) 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